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8. 12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도서관 위탁관리 운영의 장단점 분석 등 판단을 위해
위탁기간을 최소화 하고
- 같은 조 내에 항을 달리하면서 동일 조를 불필요하게 언급한
조항을 삭제하였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0조제2항 중 “제20조”를 삭제하고, 위탁 및 연장기간을
“3년”에서 “2년”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
- 안 제20조제4항 및 안 제22조제2항중 “제20조”를 삭제하였음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제2항 중 “제20조제1항” 을 “제1항” 으로 하고 “3년으로” 를 “2년으로” 하며, “3년단위” 를 “2년단위” 로 한다.

안 제20조제4항 중 “제20조제1항” 을 “제1항” 으로 한다.

안 제22조제2항 중 “제22조제1항” 을 “제1항” 으로 한다.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를 제25조로 하고,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도서관의 위탁운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며,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도서관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1조(지원) 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(감독) ① 시장은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23조(위탁운영의 철회)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.

1. 도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
2. 도서관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
3.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
4.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
5.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24조(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)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서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